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미조치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

내 용

「산지관리법」 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이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이미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과 제39조에 따라 복구비는 산지의 면적에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 전까지 예치하

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남구 ○○○○과는 아래 [표1]과 같이 (주)○○○○○○ 공동주택 용도의 산지전용허가 등 2건의 산지전용 기간(2015. 11. 11.~2018. 2. 28.)이 1년 이상으로 2015년에 예치한 산지복구비 14,183,000원(총 2건)과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22호, 2017. 3. 6.)에 따라 재산정한 복구비 16,062,000원(총 2건)과의 차액 1,879,000원(총 2건)을 추가로 예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과는 아래 [표1]과 같이 ○○○○(주), (주)○○○○ 공동주택 용도의 산지전용허가 전용기간(2016. 4.~2018. 4. 30.)이 1년 이상으로 2017년에 예치한 산지복구비 26,045,000원과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22호, 2017. 3. 6.)에 따라 재산정한 복구비 29,495,000원과의 차액 3,450,000원을 추가로 예치하지 않고 있다.

[표1] 산지복구비 예치금 재산정 명세

<단위 : m², 원>

기관	소재지	허가현황				복구비 현황		정당 복구비	미예치액
		기간	면적	수허가자	용도	예치액	예치일		
	합계	1건				40,228,000		45,557,000	5,329,000
남구	소계	2건	3,246			14,183,000		16,062,000	1,879,000
	○○동 000-0 외 1필지	2000.00.00.~2000.00.00.	1,514	(주)○○○○○○	공동주택	6,678,000	2000.00.00.	7,562,000	884,000
	○○동 000-0 외 1필지	2000.00.00.~2000.00.00.	1,732	○○○○○(주) (주)○○○○○에서 '17.2.17.자로 명의변경)	공동주택	7,505,000	2000.00.00.	8,500,000	995,000
북구	○○동 산 00-0외 16필지	2000.00.00.~2000.00.00.	7,396	○○○○(주) (주)○○○○	공동주택	26,045,000	2000.00.00.	29,495,000	3,450,000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 ○○○○과는 아래 [표2]와 같이 ○○○ 공동주택신축 등 총 2건의 산지전용협의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 전까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 642,273,000원(총 2건)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25,690,000원(총 2건)을 ○○○ 등 2명에게 예치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2017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되지 않고 있다.

[표2] 복구준공검사 현황

<단위 : m², 원>

기관	소재지	허가현황				복구현황		하자보수보증금	
		기간	면적	수허가자	용도	설계금액	준공일	금액	예치기간
	계					642,273,000		25,690,000	
동구	○○동 산000-00외 1필지	2000.00.00.~2000.00.00.	2,597	○○○	공동주택	475,000,000	2000.00.00.	19,000,000	2000.00.00.~2000.00.00.
	○동 산 000-0외 2필지	2000.00.00.~2000.00.00.	4,628	○○○ ○○	도시형 생활주택	167,273,000	2000.00.00.	6,690,000	2000.00.00.~2000.00.00.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은

[시정] 미예치된 산지복구비 5,329,000원(남구 : 1,879,000원, 북구 : 3,450,000원)과 하자보수보증금 25,690,000원(동구)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